

주요 FTA 민원사례 Series 2

FTA
이행
지침
안내
Series 2
20 選

원산지증명서




**STEP 01
원산지증명서 발급 주체**

01 p.04

수출업무 대행사 명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여부

02 p.05

비당사국에서의 원산지신고서 작성 여부

03 p.06

제3국에 소재하는 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04 p.07

제3자 무역형태의 한-EU FTA 협정적용 여부

05 p.08

작성장소가 불분명한
원산지신고서의 적정성 여부


**STEP 02
원산지증명서 서식**

06 p.09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서식 사용 여부

07 p.10

한-EU FTA 원산지신고 인증수출자 번호

08 p.11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 스템프

09 p.12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재발급

10 p.13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


**STEP 03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11 p.14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기산일

12 p.15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13 p.16

한-EU FTA 사후신청 유효기간

14 p.17

수입항 도착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15 p.18

한-EU FTA
다수 송품장 동일 원산지신고 가능여부


**STEP 04
원산지증명서 면제 및
유효성 여부**

16 p.19

여행자휴대품 통관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여부

17 p.20

한-EU FTA 원산지 신고문안
유효성

18 p.21

한-EU FTA 제3국 발행 송장에
기재된 원산지신고서

19 p.22

재수입 물품의 원산지 유효성

20 p.23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서 유효성



수출업무 대행사 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

- ▶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제도를 규정한 한-싱가포르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는 각 협정의 규정에 의거 원산지증명서의 원활한 발급을 위하여 위임규정을 두고 있음
- ▶ 한-싱가포르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에서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위임받은 자는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원산지 증명서의 신청 업무만 대리 가능

관련 규정

※ 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 1 제4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

- ① 물품의 생산자 그리고 또는 수출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받은 대리인은 당사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수출전 검사를 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 FTA 특례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원산지증명서 신청인)

-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가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비당사국에서의 원산지신고서 작성 여부

- ▶ 한-EU 자유무역협정의 제15조(일반요건) 및 제16조(원산지신고서 작성 조건)에 따라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가 송출장 등 상업서류에 작성하여야 함
- ▶ 비당사국에서 송출장이 다시 발행되는 무역거래인 경우에도 EU 역내 수출자가 해당 수출거래와 관련된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 따라서 EU 역내 수출자가 아닌 비당사국에 소재하는 자가 송출장에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한 경우에는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음

관련 규정

※ 한-EU FTA 제15조(일반요건)

- ①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럽연합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리고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후 "원산지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원산지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출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제3국에 소재하는 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Q 스위스업체가 인보이스를 발행하고, 동 인보이스에 이탈리아 제조자 B의 인증수출자번호로 원산지신고서 작성한 경우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 A ·한-EU FTA에서는 6,000유로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 당시자의 각 법과 규정 및 협정에 충족하는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 신고서 작성이 가능
- 또한, 수출자라 함은 FTA체결 상대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자이어야 하고 제3국의 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 작성권한 및 입증책임이 없으므로 제3국에서 작성한 송품장에 인증수출자 번호와 원산지신고문안이 기재되어도 원산지증명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 EU 회원국 제조자가 생산한 물품에 대해 EU회원국이 아닌 제3국에 소재하는 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는 유효한 신고서로 인정될 수 없음



제3자 무역형태의 한-EU FTA 협정적용 여부



Q 인증수출자인 벨기에 업체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EU에서 생산된 물품을 구매하여 발행한 인보이스상에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하여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 A ·원산지신고서는 수출당사자의 법과 규정 및 협정에 충족하는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인증수출자)만이 작성 가능
- 제3자 무역거래에서도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을 갖춘 EU측 수출자가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면 가능



작성장소가 불분명한 원산지신고서의 적정성 여부

◀ 거래 형태 예시 ▶



Q EU역내(폴란드)에서 선적된 물품이나 B/L상 Shipper는 스위스업체이며 포장명세서는 스위스 업체가 작성하고 포장명세서에 원산지신고문안은 기재되어 있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A 수출물품이 EU역내(폴란드)에서 선적되었더라도 원산지신고서가 제3국에서 송부되어 작성자를 알수 없는 경우,

- 원산지신고문안에 작성장소, 작성일자 및 작성자의 서명(인증수출자는 생략)이 병기되어야 함
- 따라서, 원산지신고서 작성자가 EU 역내 수출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음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서식 사용 여부

Q 한-미 FTA 적용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원산지결정기준을 반드시 명기해야 하는지?

A 한-미 FTA에서는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양식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원산지정보로서 포함되어야 할 정보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정에서 정한 정보가 포함된 송출장 등의 상업서류로 원산지증명이 가능

원산지증명서 상에 원산지 결정기준은 필수 기재 정보는 아니므로 기재되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음

• 다만, 원산지증명의 편의를 위하여 한-미 FTA 협정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을 운영하고 있음

• 권고서식에 따라 PSR이 적용되는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을 “B”로 표시하거나, 기재하지 않더라도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



한-EU FTA 원산지신고 인증수출자 번호

- ▶ 한-EU FTA에서 수출물품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신고문안에 반드시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 원산지신고서에 인증수출자번호가 아닌 EORI번호 또는 VAT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불가
 - EORI번호는 우리나라의 통관고유번호 같은 제도로서, EU에서 무역과 관련된 자에게 부여하는 등록번호와 같은 것임
 - 유럽의 수출자에게 인증수출자 번호를 요청하여 원산지신고서를 발급 요청하는 경우, EORI번호를 기재해 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

※ EORI번호 확인방법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os/eori_validation.jsp

접속 후 「EORI」선택 후 Validate EORI number 클릭

※ VAT번호 확인방법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common/databases/index_en.htm

접속 후 「VIES」선택 후 국가를 선택하고 번호를 입력

※ 인증수출자번호 체계 확인방법

YES FTA포털(<http://fta.customs.go.kr>)에서 조회 가능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 스템프

-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 받은 경우 사본제출 시 C/O 사본 제출 스템프를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 스템프〉

본 사본이 원본과 다를 경우 관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세관에서 요구시 원본을 제출하겠습니다.

수입자 000서명

- ▲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경우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수입자의 편의를 위해 사본제출 스템프를 날인할 것으로 조건으로 사본 제출도 인정하고 있음

- 수입자의 스템프 "날인"은 수입자가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사본으로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에 해당

- 다만,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때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 재발급

▶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 재발급하는 경우 발행일자는 당초 발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행일이 기재되어야 함

※ 정정발급의 경우

신청에 의해 발급기관이 승인을 하면 정정내역이 반영되며, Reference No와 발행일자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Reference Code가 바뀜

※ 재발급의 경우

Reference No, Reference Code, 발행일자는 변동이 없으며 진정등본(Certified true
copy) 문구가 인쇄되어 발급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 운영절차(OCP) 개정('14. 1. 1)

※ (발급시기) 수출기업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시기를 '수출시 또는 수출 직후'에서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 직후 3 근무일 이내'로 명확화

※ (문서사용) 다수 품목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을지 사용 허용 및 을지암식 채택

※ (오류정정) 줄을 그어 지우고 오류를 정정하는 방법 외에 원산지증명서를 새로
발급하여 오류를 정정하는 방법도 허용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

Q 인도네시아산 물품을 싱가포르업체가 수입한 후 다시 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

A · "연결 원산지증명서"라 함은 최초 수출당사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경유하는
수출당사국에 의하여 발행되는 원산지증명서를 말하므로

- 인도네시아에서 발급된 "정당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싱가포르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 인도네시아로부터 물품을 싱가포르로 수입하는 자와 그 물품을 한국으로 다시
수출하는 자가 동일인이어야 함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기산일

Q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 AK 서식에서 11번란, 12번란의 발행일자 중 유효기간 기산일 여부

- 서식 12번란의 date는 세관에서 발급된 일자를 의미하며 11번란의 date는 세관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출력 후 서명권자가 서명한 일자를 의미
- 한-아세안 FTA에서는 유효기간을 '발급(행)한 날부터'(date of issue) 12개월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발급일에 해당하는 12번란에 기재된 일자로부터 유효기간을 계산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goods were produced in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for the goods exported to

(Importing Country)

Place and date, ← [서명일자]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12.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Place and date, ← [발급일자]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OCP 개정, 시행일 '14. 1. 1.)

- 2013. 12. 31일 이전에 발급된 아세안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도 1년으로 연장
- 시행일 이전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의 경우에도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신청일 현재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 가능

※ 적용예시 : 2013. 6. 15일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물품으로서 2013. 6. 17일에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은 2014. 6. 15일까지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 가능



한-EU FTA 사후신청 유효기간

Q EU측 수출자의 파업으로 인해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간(수리일로부터 1년)이
지나서 원산지신고서가 제시된 경우,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A • FTA특례법에서는 협정관세 사후신청 기간내에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면
사후신청이 가능

- 예외적인 상황으로 원산지신고서의 유효기간 연장은 수용하고 있으나
- 협정관세 사후신청기간 연장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사후신청은 반드시 수입신고수리 후
1년 이내만 가능

〈한-EU FTA 제18조 원산지증명의 효력〉

1. 원산지증명은 수출당사자에서 발급된 날부터 12개월 동안 유효하며, 특혜관세대우는
수입당사자의 관세당국에 그 기간 내에 요청된다.
2. 제1항에 명시된 제출 마감일 이후 수입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출된 원산지증명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정해진 마감일까지 이를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수입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따라 특혜관세대우의 목적상 수리될 수 있다.



수입항 도착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Q '13년 6월부터 3차례에 걸쳐 독일로부터 수입한 물품으로 부산 보세구역에
보관중인 물품을 '16년 수입통관(원산지신고서 유효기간 '14. 4월 만기)을 하여도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 FTA특례법 시행령 제9조의2 제2항에 따라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FTA특례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은 유효기간에서 제외하므로

수입항에 도착하는 때에 원산지신고서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해당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음



한-EU FTA 다수 송품장 동일 원산지신고 가능여부

Q 한-EU FTA에서 다수건의 송품장을 하나의 원산지신고서로 작성 가능 여부

- A · 한-EU FTA에서 원산지의정서 제15조에 따라 원산지신고는 원산지제품이 수입될 때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특혜관세대우를 받는 것이며, 원산지신고는 해당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작성해야함
- 원산지신고서는 물품을 수출할 때 그 제품에 대해 작성하는 것으로 여러 건의 송품장상의 물품을 하나의 상업서류에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는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볼 수 없음

〈한-EU FTA 의정서 제15조 일반요건〉

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리고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후 "원산지 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원산지 신고서의 문안은 부속서 3에 기술되어 있다.



여행자휴대품 통관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여부

Q 한-EU, 한-미 FTA에 따라 미화 1,000달러 이하의 제품은 무관세 통관이 가능한지?

- A · 한-EU, 한-미 FTA 모두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규정은 없음. 다만, 미화 1,000불 이하 여행자휴대품은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 한-EU FTA는 비상업용에 해당하는 물품에 한해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면제하나, 한-미 FTA는 상업용을 구분하지 않고 면제
- 이 경우 협정관세 적용방법은 전체 구매 가격에서 여행자 면세한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협정세율을 적용

〈한-EU FTA 의정서 제21조 원산지증명의 면제〉

1. 사인간 소포로 송부되었거나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품은 원산지 증명의 제출을 요구함이 없이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그러한 제품은 상업적으로 수입되지 아니하고 이 의정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신고되었으며 그 신고의 진실성에 관해 의심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우편으로 송부된 제품의 경우, 이 신고서는 우편을 세관신고서 또는 그 서류에 첨부된 한 장의 문서에 작성될 수 있다.
3. 더 나아가, 이러한 제품의 총 가치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 가.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되는 경우, 소포의 경우 500유로 또는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품의 경우 1,200유로
 - 나.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소포의 경우와 여행자 개인 수하물의 경우 모두 미화 1,000달러



한-EU FTA 원산지 신고문안 유효성

Q 한-EU FTA 원산지 신고문안이 협정에서 정하는 문구와 인증번호 기재 위치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되는지

〈사례 1〉 The Exporter(authorized exporter authorization-number DE/8750/EA/0042)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EU(Germany) preferential origin

〈사례 2〉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European Communitypreferential origin.

Approved exporter's licence number(DE/3450/EA/0329) HZA Giessen

A · 원산지 신고문안의 인증번호 기재 위치 오류는 원산지를 확인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미한(형식적) 오류로 판단되므로

- 원산지신고문안이 협정에서 정하는대로 작성되고 인증번호 기재 위치가 상이한 경우, 동 FTA에 따른 원산지제품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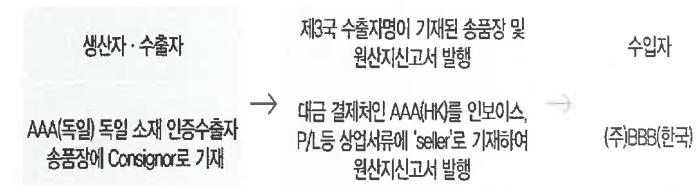


한-EU FTA 제3국 발행 송장에 기재된 원산지신고서

Q 인보이스 상 SELLER는 AAA(HK)로 기재되어있으나 실질 인보이스 발행자는 AAA(독일)로서 해당서류에 Consignor로 원산지신고서 발행(서명 장소 및 서명권자의 서명 포함)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 상업서류 상 SELLER로 제3국 수출자가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는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 거래 형태 예시 ▶



-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신고서는 체액당사국에 소재하는 수출자(물품가격이 6,000불을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가 발행
- 독일 소재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송품장의 'SELLER'란에 단순히 EU 회원국이 아닌 제3국에 소재하는 자가 기재된 경우에도 EU연내 수출자에 의해 원산지 신고문안이 작성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유효한 원산지 신고서로 인정 가능

* EU 본사 기업으로 아시아(홍콩 등)지사가 있는 경우 송품장상 'SELLER'에 아시아(홍콩 등)지사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음(대금결제 목적상)



재수입 물품의 원산지 유효성

**Q EU 원산지물품으로서 국내 보세창고 보관 중 제3국(홍콩)으로 반송되어 보세구역
장치된 후 다시 한국으로 재수입될 때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A 한-EU FTA에서는 EU 국가로부터 단일운송(Single Consignment)에 의해 우리나라로
운송되어야 함**

우리나라에 도착 이후 제3국으로 재운송되어 다시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은 EU로부터 직접운송된
단일 택송화물로 볼 수 없어 한-EU 협정관세 적용 불가

〈한-EU FTA 의정서 제1조 정의〉

카. 택송화물이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승부된 제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에 대한 단일의 운송서류에의하여, 또는 그러한 서류가 없는 경우 단일의 승송장에
의하여 다른여지는 제품을 말한다.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서 유효성

▶ 원산지포괄증명의 유효기간은 포괄증명기간 시작일로부터 12월내이며 유효기간 기산일은
해당 물품의 선적일 기준

▶ 원산지포괄증명서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은 원산지포괄증명서의 발급일자와 다를 수
있으므로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소급 발급되거나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보다
먼저 발급된 원산지포괄증명서는 인정되며 해당 수입물품은 협정관세 적용 대상

구 분	원산지포괄 증명기간	증명일자	협정관세 적용여부
사례1 소급발급되는 경우	2014. 1. 1~2014. 12. 31	2014. 4. 1 또는 2015. 2. 1	적용
사례2 먼저 발급되는 경우	2014. 1. 1~2014. 12. 31	2013. 12. 1일	적용

▶ 원산지포괄증명은 동일상품을 복수 선적할 때 적용하는 것이므로 원산지포괄증명기간에
협정체약상대방인 수출국(미국)에서 선적된 물품에 적용

포괄증명기간에 선적된 물품이 아닌 경우 보정을 요구하여 처리하되, 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 배제

구 분	원산지포괄 증명기간	선적일자	수입신고 일자	협정관세 적용여부
사례1 포괄증명기간에 선적된 경우	2014. 1. 1~2014. 12. 31	2014. 12. 15	2015. 1. 15	적용
사례2 포괄증명기간에 선적되지 않은 경우	2014. 1. 1~2014. 12. 31	2013. 12. 15	2014. 1. 15	적용배제

* 참고 : 각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

구 분	발급주체	서식	유효기간	제출면제기준
한-칠레	수출자 자율발급	통일서식	서명일로부터 2년	미화 1,000불 이하
한-싱가포르	(상) 세관 (한) 세관, 상공회의소	각자 서식	발급일로부터 1년	미화 1,000불 이하
한-EFTA	수출자, 생산자 발급 *스위스치즈 기관발급	원산지신고서 (상업서류 등)	서명일로부터 1년	미화 1,000불 이하 (EFTA: 소포 500유로, 개인수화물 1,200유로 이하)
한-아세안	(0) 세관등 국가기관 (한) 세관, 상공회의소	통일서식 (Form A)	발급일로부터 1년	FOB 미화200불 이하
한-미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서식 미 지정(권고서식)	발급일로부터 4년	미화 1,000불 이하
한-인도	(인) 인도수출검사 위원회 (한) 세관, 상공회의소	통일서식	발급일로부터 12개월	개인소포 및 여행자 수화물
한-EU	수출자 자율발급 *인증수출자 요건 (6,000유로 초과)	원산지신고서 (상업서류 등)	발급일로부터 12개월	미화 1,000불 이하 (EU: 소포 500유로, 개인수화물 1,200 유로 이하)
한-페루	기관발급(5년간), 자율발급 *인증수출자 요건	통일서식	발급일로부터 1년	미화 1,000 이하
한-터키	수출자 자율발급	원산지신고서 (상업서류 등)	발급일로부터 12개월	미화 1,000불 이하의 (터키: 소포 500유로, 개인수화물 1,200 유로 이하)



fta.customs.go.kr
ftapass.or.kr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fta.customs.go.kr

ftapass.or.kr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Tel. 042-481-3228 Fax. 042-481-7753